

1996년도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양계)

닭 경쟁력 제고사업(자율)

1. 목적

양계경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
므로서 규모화, 자동화를 추진하고 사육환경을 개선
하여 양계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개선 도모

2. 추진방향

- 가족농 중심의 양계 전업농을 중점 육성
- 시설자동화 지원
 -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환경제
어시설 및 각종 기계기구 등을 종합지원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표 1)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76,500백만원 (축발기금융자)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1년간)

○ 지원내용

- 기반시설 : 용수개발, 부지정리, 도로개
설, 전기인입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신·증·개축, 급이·급

표 1.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개소 508	526	730	250	250	1,200	3,464	
사 업 비	계	68,245	79,273	109,286	75,000	75,000	360,000	766,804
	국 고	—	—	—	3,750	3,750	18,000	25,500
	국고융자	11,320	—	—	48,750	48,750	234,000	324,820
	기금보조	—	—	—	—	—	—	—
	기금융자	32,610	52,900	76,500	—	—	—	162,010
자 부 담	24,315	26,373	32,786	22,500	22,500	108,000	236,474	

※ '97년 이후는 42조원 투융자계획 기준임.

- 수시설, 환경개선 시설(자동환기장치, 열풍기, 온도조절기 등), 각종 축사내부시설, 부화시설(건물, 부화 장비 등)
- 유통시설 : 계란집하장 시설(건물, 운반장비, 계란선별기 시설 등), 계란 저온저장 시설(건물, 냉장시설 등)
- 기계, 기구, 장비 : 트랙터, 로더, 소독장비, 부산물처리장비 등
- ※ 부지구입 및 가축구입비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별도의 공해방지 시설사업으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참조
- (2)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또는 종계장, 부화장 경영자
- 양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축협, 자생적인 협업체 등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가 : 호당 2억원이내, 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단 종계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시설은 사업규모,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액지원 가능
- 닭지원 조건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
 - 지원비율 : 융자 70%이내, 자담 30% 이상
- (4) 사업시행 체계
- 추진방식 : 농어민 자율방식
- 사업대상자를 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업양계 농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 육 소규모 다수 농가에 소액분산 지원역제
 - 축사 신·증축 및 개축의 경우 시설완료후 전업규모로 사육 가능한 자에 최우선 지원
 - 기 지원한 농가중 전업화를 위하여 지원요구시 추가지원하여 전업농 규모로 육성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전업농, 종계업>

-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종계장, 부화업은 시·도지사에 종계업, 부화업 등록이 되어있고 분양실적이 있는 자

<축협, 법인, 협업체 등>

- 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법인
- 양계사업을 목적으로 5인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2) 신청절차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 희망자는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제 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 우선순위

<전업농, 종계업>

- 종계업, 부화업, 닭계열화사업 계약농가
 - 계열사업 참여농가는 계열주체의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
- 전업규모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자동시설을 갖추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
-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가 현장교육등 시범농장으로 활용하는 등 선도양축을 할 수 있는 자

○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

〈조합·법인·협업체〉

○ 구매, 출하, 방역 등의 공동추진으로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

※ 조합, 법인, 협업체 등의 구성농가 및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는 개별농가에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2) 선정절차

○ 시·군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제15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계열주체는 지원이 필요한 계열농가 내역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마. 사업시행

(1) 시·군은 대상자 결정사항을 통보

(2) 확정된 대상자는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하여 축사건축 및 경영 등에 대한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 닭 경쟁력제고사업은 농가자율사업으로서 사업신청자가 자율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업임

(3) 사업대상자가 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수 농가에게 소액 분산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4) 시·군은 사업착수전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물관리 기술 등의 교육 실시

(5) 축사 등의 신축시 시설부지는 수해 등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지도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제35조~제40조의 제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나.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일 자	서 식	보 고
추진실태	시·도	매년 7.31	별지제1,2,3호 서식	계획대 실적을 대비
추진실적 및 대상자 선정 결과	시·도	매년 3.10	"	"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업 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 '95.7.26)에 의거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4-9434)

○ 시·도 : 농정국 축산과

○ 시·군 : 산업(축산)과

축산단지 조성사업(공공)

1. 목적

가축사육시설 단지화로 축산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자재의 구매, 생산물의 판매·방역·분뇨처리 등을 공동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동일 축종의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 유도

○ 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분뇨처리 시설에 의한 사육여건 개선

○ 공동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배치에 의한 경영개선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 원)

		'95까지	'96-'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83개소	51	76	210
사업비	계	2,721	3,250	3,600	9,571
	기금보조	220	325	360	905
	기금융자	1,791	2,110	2,340	6,241
	지방비	145	165	180	490
	자담	565	650	720	1,935

* '94.6.14 농발대책기준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60,159 백만원
- '95계속사업, 기존단지보완, '96신규사업 및 제주도 한우마을 공동목장 조성시설 보완사업비 포함.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 (1) 사업기간 : 2년간
- (2)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진입도로, 목도,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등
 - 조사료생산기반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지 조성
 - 사육시설 : 부지정지, 축사시설, 창고, 관리사 등 부대시설
 - 기계 및 기구 : 축산물생산, 운반처리용 기계·기구, 가축방역용 장비류 등

- 기타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비
- ※ 운영비(가축구입비·부지구입비·사료비·임차료 등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기존의 축산시설을 이전(당해 축종의 기존 축산농가에 한함)하여 전업규모화 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자
- 기허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된 단지로서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자
- 기존의 가축집단사육지역에 기반시설과, 축사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단지화 하고자 하는 자

○ 단지구성 요건 : 한우·젖소 3호이상, 돼지·닭 5호이상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액

- 일반농가 : 호당 3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비율 : 축산단지 지원기준 참조

○ 지원조건 (융자)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

(5) 사업시행체계

○ 사업구분 : 지방공공사업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 후 의견첨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고 법적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심사요청하고 동 심사 결과에 의거 선별하여 농림수산부에

예산요청(계획서 첨부)

○ 농림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확보하여 계획을 시·도에 시달

○ 시·도지사는 소요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에 조치다.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단지구성 요건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축사 등의 건축에 법적제한 사항이 없고 민원 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야함)한 자

- 단지조성 후 기존 축산시설을 폐지하고 사육가축을 이전하여 가축노동력으로 전업화가 가능한 자(신규 축산농가 또는 현사육 축종과 다른 농가는 제외)
- 단지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력이 있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확실한 자

(2) 신청절차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2조, 제13조

참조

(3) 구비서류

○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서

라. 대상자선정

(1) 선정 우선순위(신규조성)

○ 타법령에 의거 축사시설의 이주 명령을 받은 자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영농법인체를 구성하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규모의 전업규모화를 위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상습수해 등 예상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을 안정지역으로 이전코자하는 경우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선정절차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5조~제19조

참조

- 대상자 선정은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의 제반여건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확정

마. 사업시행

<추진상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다음사항이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대로 미 이행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존단지의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조치한다.

- 사업대상 부지는 단지구성원 자체자금으로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고 법적제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관리능력, 축산분노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조성하여야 한다.
- 단지 참여농가의 현황과 자금부담 능력, 담보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료는 공동으로 계약생산 등 일정사료로 통일되어야 한다.
- 생산물에 대한 판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돼지의 경우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육가공(수출)업체, 계열주체와 생산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 하여야 한다.
- 가축방역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건물시설, 부지정리 등 세부 항목별 사업비용은 설계서 등의 자료에 의거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축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의 심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의신청은 시장·군수가 사업제

확검토후 도지사에 신청, 시·도지사는 예 산 요청 1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 술연구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단지조성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자체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결과를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 입시설 등)은 토목설계에 의거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사업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기 능을 이용한다.

○ 기반시설비 중 지방비(20%) 는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 비율을 증 가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시·군)은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신규 및 기존단지포함)

○ 시·도지사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고 사후관리 실시

○ 시·도지사 및 축협 도지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타용도 전용하거나 계획대로 미 이행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나.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축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도	매년 3월10일까지	○별지 제 2호서식
○축산단지조성사업 (중간, 완료)	도	매년 12월 20일 완료후 1개월이내	○계획대 실적대비 사진첨부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4-9434~5 췌수, 돼지, 닭)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축협중앙회 시·도 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축협

가축방역사업(공공)

1. 목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 가축혈청검사기업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사전예방

○ 우수동물용예방약의 생산·공급으로 전염병발 생 방지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 민보건향상

2. 추진방향

○ 만성·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억제정 책 추진

—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검진·도태사업 확대

○ 국가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

— 예방주사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혈청검사사 업 강화

— 인수공통전염병 및 종식단계전염병에 대한 사업 확대실시

○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추진

— 방역요원에 대한 의식전환, 사명감 고취로 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 년차별 시도시험소 기술인력 양성과 정밀 검사장비 확보

—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 확대 추 진

○ 가축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의 연계추진

- 도축장, 도계장 출하가축의 혈청검사에 의한 가축질병의 추적조사로 양성축 출하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관내 종돈장·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업무강화로 선진방역 대책 강구
 - 가축질병예찰업무의 활성화 강력추진
 - 관내 공수의의 적극 활용으로 예찰업무의 활성화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약 개발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방역 효과 거양
 - 동물약품제조업의 약사감시 및 품질관리 강화
- (*사업별 지원율은 '97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가. 가축혈청검사사업

(1)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적기실시 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

(2) 사업시행기관

○ 수의과학연구소 : 진단액등 생산 및 기술지도

○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실시 및 결과 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3) 검사대상질병

○ 닭 : 뉴캐슬병 (ND) · 산란저하증 (EDS'76) · 감보로병 (IBD) · 전염성기관지염 (IB) · 추백리 (SP) · 마이코프라스마병 (MG) (6종)

(4) 실시방법

① 닭 혈청검사

○ 검사대상선정

- 검사를 요청한 양계농가를 우선하고, 종계장에서 직접 채혈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 채취 : 매월 균분 실시

(5) 사업량 : 연 734,300건 (종계장·종돈장 사업량 258,600건 포함)

○ 닭 : 430,200건

- 시험소 : $39,200수 \times 6종 = 235,200$

$32,500수 \times 6종 = 195,000$ (종계장)

(6) 소요예산 : 311,230천원

① 진단액등 생산 : 수의과학연구소 : 220,090천원

○ 닭 : 6종 각 39,200수분 99,960천원

- 진단액 : 5종 (ND, EDS, IBD, IB, MG) : 2,500원

1종 (추백리 SP) : 50원

- 시험소용 99,960천원

$39,200수 \times 2,550원 = 99,960천원$

② 실시재료비 : 91,140천원

○ 닭 : 47,040천원

· 시험소 : $200원 \times 6종 \times 39,200 = 47,040천원$

(7)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성적을 조사분석하여 면역역가·백신 접종 적기여부·접종방법의 개선 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농장에 즉시 동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

○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채혈한 혈청의 검사 및 분석결과는 출하농장이 타 시·도일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도에서 방역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8) 기타

○ 각 시·도지사는 닭, 돼지, 소의 혈청검사용 진단액 추가 공급분을 활용하여 관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강화 및 양축농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혈청검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축위생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전문인력을 고장배치하여 진단기술 해양에 주력토록 조치하고, 검사실시에 필요한 장비 등을 년차적으로 보강토록 할 것.

- 실험실 상시인원을 필히 배치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을 기할 것.
(실험실요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강구 추진)

(9) 보고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 할 것(제1호서식 생략)

종축등록 및 능력검정사업(공공)

1. 닭경제능력검정

가. 목적

- 종계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선택 지표 제공
- 양계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향

- 검정방법의 공정화, 전문요원의 전문화, 검정 시설·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에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의증진

다. 투융자계획

(1)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	175천수	30	42	42	42	252	583
사업비	1,286	498	231	231	231	1,386	3,863
축발기금	1,286	498	231	231	231	1,386	3,863

(2) '96 사원계획

○ 검정사료비, 검정시설 및 장비 지원(축발기금 보조 231백만원)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대한양계협회

(2) 사업현황

- 검정계획 : 종계능력검정 42천수(산란계 30, 육계 12)
- 지원대상 : 대한양계협회 닭능력검정소
- 자금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 검정방법 : 닭 능력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87-42호, '92. 6. 5)에 의함
- 닭 검정위원회 운영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능력검정 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하고 대한양계협회에 영구보존

(2) 보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6 닭 경제능력검정 세부계획('95. 2월말까지)

○ 사업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3)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
-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 대한양계협회(02-588-7651)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공공)

1. 목적

-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
-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전

2. 추진방향

-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
-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가시화
- 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

3.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주관기관 : 대한양계협회
- 협조기관 : 축산기술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가금학회 및 재래닭보존연구회등
- 사업기간 : '94~'97
- '96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액
재래닭의 생산능력 검정 및 품종기준 설정	149백만원
우량교배조합선발 및 교배종의 사양관리기준 설정	64
실용계 사양관리체계 확립 및 육질특성 규명	47
계 (3건)	260

- 지원내역(축산발전기금 보조) : 가축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등

4. 세부추진요령

- 대한양계협회장은 사업협조기관과 협의하여 '96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담
- 시험축 확보 : 국내 연구기관, 민간업체등에

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확보

- 사업비 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분기별 신청에 의거 개산불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분기 개산불 지급시 전분기분 정산
- 사업분리
 - 대한양계협회장이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지도, 감독
 - 시험기간중 생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 보고 등(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발총괄기관장)
 - 연간 사업세부추진계획 보고('96.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보고(매분기마다 분기익월 말일 까지)

국산종계개발 지원사업 사후관리(공공)

1. 목적

- 국제경쟁력 있는 국산종계 개발 유지
- 국산종계개발유지사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

2. 사업주관기관 : 대한양계협회

- 사업추진상황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단 구성 운영
-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의 합리적 활용여부

3. 관리대상 : 미원 마니커 주식회사

4. 관리기간 : 육자 실행일로부터 10년간 ('94-2003)

5. 관리방침

- 대한양계협회장은 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년2회(6월, 12월) 조사

— 사업평가단으로 하여금 년1회이상 추진상황 평가

○ 관리대상업체는 용도별(산란1, 육용1)로 1계종이상 국산종계 개발유지

○ 관리대상업체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닭경제능력검정에 매년 출품하여 외국계종과 능력을 비교하여야 함

○ 관리대상업체는 자금지원 5년 이내에 개발된 국산종계가 닭경제능력검정 출품계종평균수익성(초생추 판매가격기준)의 90%수준이상 도달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이 안될 경우 대한양계협회장은 축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

○ 대한양계협회장은 추진상황 조사결과를 매반기 익월 말일까지 가축개량총괄 기관장에게 보고

— 사업평가단 평가결과 1회 포함

축산정책개발 및 교육·홍보(공공)

1. 축산업 자조금 지원

가. 목적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 등을 통한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

나.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등에 의한 축산물 가격 안정유도

○ 축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다.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1)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대상자 :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

○ 사업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기금보조	자부담	
자조금 지원사업	2개소	600	200	400	

○ 지원조건 및 방법

— 연도별로 '96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을 승인받은 생산자 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조성액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 축협중앙회장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지급

양축자금지원(공공계획)

1. 목적

○ 양축농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축산 경영을 원활하게 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 재해를 입은 양축농가에 저리의 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자금부족을 해소하여 재황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지원으로 자금의 효율성 제고

○ 노령화·부녀화되어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후계자, 4H회원 등에 우선 지원

○ 축산업의 특성상 가공·유통분야의 진출에 의한 상업화·기업화가 급속히 전환됨에 따른 연계지원 및 동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조정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94까지	'95	'96	'97	'98	'99	'99-'04	누계
재 원 별	계	4,000	4,000	4,200	4,600	5,000	5,400	년400억	7,400
	재특회계	1,208	1,416	1,724	2,132	2,540	2,740	순증	3,740
	한은차입금	832	624	416	208	—	—		—
	축협자금	1,960	1,960	2,060	2,260	2,460	2,660		3,660

나. '96 지원규모(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5(A)	'96(B)	증감(B-A)
조 달	재 정 자 금	1,416	1,724	308
	한은차입금	624	416	△208
	축 협 자 금	1,960	2,060	100
계		4,000	4,200	200
운 용	일반양축자금	3,950	4,150	200
	특수양축자금	50	5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단기성 자금 지원

○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 양축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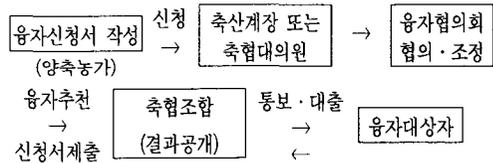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양축자금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로 인하여 가축·축사시설 등이(유실, 매몰, 폐사 등)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

(3) 지원규모 및 조건

	호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금리 및 이자징수
○ 일반양축 자금	8백만원 이내	1년 이내	년5%, 원금상환일 후취(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 특수목적 양축자금	피해액과 정부지원액(보조+음자)의 차액, 단 호당 100만원미만은 제외	"	"

(4) 사업시행체계



※ 양자협의회의 구성 :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이하갈음), 양축농가대표3인(후계자1, 일반 2)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일반양축자금

- 축협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 축산분야 시설자금을 지원받은후 경영비가 부족한 농가에 우선지원
- 후계자, 4H회원 등 전업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
- 양축규모 및 양축자금의 기 지원여부를 감안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피해가 큰 농가(50%이상)를 우선 지원하되 일반양축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도 추가지원 가능

(2) 선정절차

○ 일반양축자금

- 축산계장은 양자협의회를 개최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하여 대상

자별 우선순위를 선정

-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 해당 조합에 제출
-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이 용자협의회를 거쳐 추천한 자중에서 대출·신청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 및 본인에게 통보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피해농가수 및 피해액 등을 감안, 대상농가 및 지원금액을 별도로 결정

라. 사업시행

(1)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자금배정액,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자금지원 계획 등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홍보

(2) 양축인은 용자신청서를 작성, 관내 축산계장에게 신청

(3) 축산계장은 “용자협의회”를 개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조정한 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4) 축협조합장은 추천된 자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 및 게시판에 공개

(5) 용자실행 : 공제불가, 본인에게 직접 지급, 통장지급원칙 준수

(6)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용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초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7) 특수목적 양축자금 세부지원 요령은 별도 시달

※ 특수목적 양축자금은 사유 미발생시 축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양축자금으로 지원 가능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조합장 책임하에 목적사용 여부등을 수시확인, 필요시 회수

나. 보고 : 축협중앙회장은 용자실행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 축협중앙회 여신관리부
- 시·도 축산과, 축협도지회
- 시·군 : 시·군 축산계, 관할축협(지역 및 업종)조합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 목적

전문경영 주체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케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추진방향

- 축산업에 관련된 기업체를 계열주체로 육성지원
- 계열사업 참여농가에는 돼지·닭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계열화 사업 추진
- 부분계열화 등 다양한 계열화 추진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95까지	'96-'98	'99-2004	합 계
사업량(개소)		26	15	12	53
사업비	합 계	1,475	750	840	3,065
	용 자	1,085	525	600	2,210
	자 담	390	225	240	855

* 42조원 투융자 계획기준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26,886 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1) 사업기간 : 2년간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사육시설, 도축(도계)장, 종축생산 시설, 가공 및 판매시설 단, 도축장(도계장) 등 투자액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은 증·개축비(별표 1 참조)

별표 1. 가축계열화사업 지원 내용

구 분	배 지	담
종축생산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
사육시설	○돼지사육시설 및 장비 - 돼지경쟁력제고사업 지원 내용 참조	○닭사육시설 및 장비 - 닭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내용 참조
도 축 장 (도계장)	○증·개축시에만 지원	○좌동
가공시설	○가공 및 저장시설 ○기계·기구·장비	○좌동 ○좌동 · 계란집하장, 난가공공장 포함
판매시설	○냉동·냉장시설 및 차량	○좌동
기 타	○가축계열화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좌동

※가축구입비, 부지구입비, 사료비, 임차료등의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대상축종 :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도축(도계), 부화, 종축업, 사료제조업 등 해당 축종의 축산관련사업자로서 신규로 가축계열화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 단체
- 기존계열화 업체중 사업의 보완을 위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계열사업체

- 닭(육계)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 실적이 있는 자(사업신청 전년도에의 연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인 사업자)

(4) 지원조건

○ 지원액 : 2년간 분할지원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 이상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생산자 단체) ~ 8%(기타)

(5) 사업시행체계

○ 사업구분 : 지방공공사업

○ 대상자선정 등 사업추진 : 시장·군수가 시·군농발위원회 심의를 받은자로서 시·도시사가 선정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도축(도계), 부화, 사료제조업, 종축업 등 축산관련 사업자

○ 대상자구비조건

- 축사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완전 또는 부분계열화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지원대상이되는 시설부지를 미리확보(소유권 등기) 할 것
- 계열 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이 있을 것
- 계약생산된 축산물을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브랜드화하여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것

(2)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수립 → 시장·군수 경유 도지사에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확정

- 도지사는 예산요구시 업체별로 사업계획

을 사전 검토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신청(사업계획 제출분에 한하여 예산반영 여부 결정)

- 검토시 유의사항
 - 부지확보 및 사업확정후 조기 착수 가능성 여부
 - 축산관련 사업참여 여부
 - 담보능력 및 융자금 상환능력(사업신용도) 조사

(3) 구비서류

- 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자율적으로 가축계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규모확대를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업체

○ 계열사업에 필요한 일부시설(자축생산, 도축, 가공, 유통, 사료제조시설등)을 확보하고, 미비한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설보완으로 계열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업체

○ 기존의 지원을 받은 계열화업체로서 규모확충과 보완을 위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업체

(2) 신청절차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추진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추진

마. 사업시행

〈추진상 유의사항〉

○ 계열사업에 필요한 시설중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도축(도계)장, 사료공장, 가공장 등의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을 임대하는 등으로 추진하고, 계열농가의 시설지원은 계열주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에 별도로 구분하여 우선지원하거나, 계열주체가 희망시에는 동주

체를 통하여 계열농가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가와외의 계약 내용이 공정하도록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 부지는 계열주체가 자체확보하여 소유권등기가 되어있고 법적제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관리능력,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추진

○ 건축시설 등 사업비는 축산단지 지원기준과 설계자료 등에 의거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 사업비지원은 기 지원된 유사사업여부를 조사하여 중복지원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가축계열화사업 예산지원 신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의 심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의 신청은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검토 후 도지사에 신청, 시·도지사는 예산요청 1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가축계열화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자체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착수 당년도에 사업을 착수치 못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 시·도지사는 사후관리지침을 수립 시달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하고 사업계획대로 시행토록 지도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계획대로 미 이행시 지원 자금 회수조치)

나.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식
○가축계열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도	당년 3월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가축계열화사업 (중간, 완료)	도	매년 12월 20일 완료후 1개월이내	사업 계획 대실적대비
업체별 계열화사업생산 실적 (지정업체별, 축종별구분, 1년간실적)	도	익년 1월2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4-9434~5)
- 축협중앙회 가공식품 사업부(02-224-8114)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공공)

1. 계란가공시설

가. 목적

- 계란생산농가의 직접적인 가공참여지원으로 계란의 소비형태를 다양화하고 농가수의 제고
- 상인중심의 계란유통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전환 도모

나. 추진방향

- 계란의 유통단계 축소 및 계란의 상품성제고를 위해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확대

다. 투융자계획

- 지원계획

	'95	'96	'97	'98	2000
계란가공장	3개소	3	3	3	20

- '96 지원계획 : 5,320백만원

라. 사업추진계획

- (1)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건물, 가공시설, 냉장(동)시설, 폐수, 발전 시설 등

(나)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영농법인, 산란계 계열업체, 계란가공업체, 농가등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이내 용자
- 지원조건
- 용자기간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금리 : 년리 5%

마.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선정시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

- (1) 계란의 자가생산량이 많은 업체(농가)
- (2) 판매망(판매계획)을 다수 확보한 업체(농가)
- (3)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해 자체 브랜드를 등록(특허청)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브랜드 등록계획이 있는 업체(농가)

- 바.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은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을 완료후 해당 시·군의 지도하에 추진

- 사업기간 : 1년~2년

- 사업계획은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참조

아.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도지사

-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 (2) 보고 : 사업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 사업완료보고는 사업완료후 15일 이내

- (3)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전화 : 02-504-9436~7)

- 시·도 : 도 축산과

- 시·군 : 군 축산과(산업과 축산계) **양계**